

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7. 8. 8.(화) 15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 원 장
허 욱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표철수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○ 제2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○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가. 한국디엠비(주)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기본계획(안)에 관한 건 (2017-22-124)

○ 「한국 디엠비(주)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기본계획안」에 대해 김영관 방송 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심사 기본방향,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, 심사항목, 심사평가방안 및 변경승인 여부 결정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7-22-125~131)

○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제1항 및 제28조제1항 등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과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정○○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 의한 시정조치안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제1항 및 제28조제1항 등을 위반한 (주)네오미오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각각 위반행위 즉시 중지,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,
- 같은 법 제76조제1항,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[별표 9] 및 「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」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, 가중·감경사유 등을 적용하여,
-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을 위반한 (주)주주넷에 대해 기준금액 1,000만원을 적용하되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8조에 의한 감경사유 중 사업규모가 소규모인 사업자임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50%를 감경하고,
-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위반한 (주)네오미오, 파타고니아코리아(주)에 대해 각 1,500만원, 에스알에스코리아(주), 옥반식품영농조합법인, (주)주주넷에 대해 각 1,000만원, (주)디지털조선게임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- 또한,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하여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정○○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[별표5], 「과태료의 부과기준」 2.아.에 따라 기준금액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- 다만, 본문 내용 중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관련 시정조치안 내용 중 '네오미오(주), 옥반식품 영농조합법인, 파타고니아코리아(주)는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 유출증거가 불충분하고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바'의 표현을 '네오미오(주), 옥반식품 영농조합법인, 파타고니아코리아(주)는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 유출증거가 불충분하여'로 수정하고, 그 외 내용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함

다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7-22-132~134)

- o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등을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안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상기 동 법조항을 위반한 (주)원모바일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각각 위반행위 즉시 중지,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고,
 -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등을 위반한 (주)원모바일에 대하여 과태료 기준금액 1,000만원을 적용하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으로 과태료 부과 관련 처리지침 제9조에 따른 가중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50%를 가중하여 1,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신분증 스캐너 인식을 위해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편집하여 출력하는 신분증 위조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대검찰청 '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'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 - 다만, 드림에스제이텔레콤과 하나정보는 위반행위가 1개인 소상공인이고 과실에 의한 경미한 위반으로 사전 의견제출 기한 내 위반사항을 이미 모두 시정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처리지침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☐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회의는 8월 10일(목)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6:56)